

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 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2. 12. 14

나. 회부일자 : 1992. 12. 14

3. 제안이유

○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가 '92. 12. 31자로 시한이 만료되어

○ 동조례의 존치기간 시한연장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(지기 01210 - 897)

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○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 시한연장

연 행	개 정
이 조례는 1992. 12. 31일 폐지한다.	이 조례는 1995. 12. 31일 폐지한다.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,

동조례의 존치기간이 '92. 12. 31자로 시한 만료되는 바, 존치기간의 시한연장이

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존치기간을 '95. 12. 31로 연장하는 것으로 승인하여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6. 별첨

·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

·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